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8. 22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제출일자 : 1995년 8월 8일

회부일자 : 1995년 8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1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95. 8. 22)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실장 김 광 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에 따라 명칭의 변경 및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등 상위법령에 맞게 같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되었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
- 보상금의 지급 요건이 증복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 부지사의 직제가 행정·정무부지사로 나뉘어짐에 따라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함.
- 심의회 위원중 "도 본청 관련 실·국장 1인"을 "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심의회 간사는 도지사가 임명한 "도 소속 공무원"에서 "도 기획관"으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재평)

충청북도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96. 7. 1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명칭의 변경 및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2조 제2호중 "일비"라 를 "회의수당이라" 하고 "일비를"을 "회의수당을"로 하며

둘째,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일비"를 각각 "회의수당"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본문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증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를 제1항 각호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며

셋째, 제9조 제2항을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1인은 도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나머지 3인은 다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조·같은항 "제3호 제4호를 제2호 제3호로 한다.

넷째, 제14조 제2항 "간사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를 "간사는 도 기획관으로 한다"로 하여

본 조례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문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 : 8명, 찬성 : 8명)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필요한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